

수원지방법원 2024. 5. 24 선고 2022가단1629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A

피 고 1. B 주식회사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률

변 론 종 결 2024. 5. 17.

판 결 선 고 2024. 5. 24.

주 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9,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20.부터 2024. 5.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 D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3,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변경 전 사명 '주식회사 E', 이하 '피고회사'라 한다)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8차2494 어음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나. 수원지방법원은 2018. 11. 29. 위 신청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3억 2,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8. 12. 20.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회사가 점유 중인 동산에 관한 강제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을 신청하였다(수원지방법원 F). 수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은 2019. 7. 9. 피고회사가 점유 중이던 소방함 7대, 스마트원 맨홀 4대를 비롯한 총 42개 품목을 압류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강제집행절차에서 매각허가를 받아 2019. 8. 22. 매각대금 4,259만 원을, 집행채권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완납하였다.

라. 피고회사는 위 압류된 스마트원 맨홀 4대 중 2대가 포함된 스마트원 맨홀 5대를 한국전력공사에 대금 2억 1,070만 원에 매도하고 위 압류일 이후인 1) 2019. 9.경 이를 한국전력공사에 인도하였다. 또한 피고회사는 위 압류된 소방함 7대 중, 2019. 9. 19.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5대를 대금 4,490만 원에, 2019. 10. 17. 인천중부소방서에 2대를 대금 1,800만 원에 각 매도하고, 그 즈음 이를 해당 매수인에게 각 인도해 주었다.

마. 한편 피고 C은 2019. 3. 14.부터 2019. 8. 22.까지, 피고 D은 2019. 8. 22.부터 2021. 6. 8.까지 각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바. 원고는 2021. 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들을 상대로 유체동산인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 청구취지는 “주위적으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위 압류된 42개 품목의 동산을 인도하라는 것이었고,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1. 7. 21. 위 소송(2021가단5002489)에서,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되, 피고 C,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포기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관련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는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강제집행 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집행목적물이던 스마트원 맨홀 4대, 소방함 7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그러나 피고회사는, 위 스마트원 맨홀 4대를 한국전력공사에 2억 1,070만 원에, 위 소방함 7대를 인천광역시 부평구와 인천중부소방서에 합계 6,290만 원(=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대한 매매대금 4,490만 원 + 인천중부소방서에 대한 매매대금 1,800만 원)에 매도하고 이를 해당 매수인에게 각 인도해 주었다.

3) 피고회사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 스마트원 맨홀과 소방함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횡령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 매도대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회사는 위 스마트원 맨홀과 소방함의 가액 합계 2억 7,360만 원(= 스마트원 맨홀 4대 2억 1,070만 원 + 소방함 7대 6,290만 원) 중 일부인 2억 5,36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한편 피고 C, D은 피고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대주주로서 피고회사와 경제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그들 역시 피고회사와 공동하여 위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금반환의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 1) 피고회사가 이 사건 강제집행의 목적물 중 소방함 7대를 인천광역시 부평구와 인천중부소방서에
합계 6,290만 원에 매도하고 이를 인도해 준 것은 맞다. 다만 이 사건 강제집행의 목적물로서
한국전력공사에 매도된 스마트원 맨홀은 4대가 아니라 2대뿐이다.
- 2) 위와 같은 스마트원 맨홀과 소방함의 처분은, 피고회사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G에 의해
이루어졌고, G의 작은아버지인 원고는 위 처분을 승인하거나 묵인하였다.
- 3) 처분된 스마트원 맨홀과 소방함은 압류된 상태 그대로 인도된 것이 아니라, 압류된 상태의 현황에
부자재가 설치, 부착되어 완제품으로 가공, 완성한 뒤 처분된 것이다. 따라서 처분대금 전액이 그대로
원고의 손해라고 볼 수는 없고,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가공절차 이전 또는
부자재를 설치하기 전의 가액, 즉 스마트원 맨홀의 경우 개당 300만 원, 소방함의 경우 개당 190만
원, 합계 1,930만 원[= (300만 원 x 스마트원 맨홀 2개) + (190만 원 x 소방함 7개)]이 손해액 또는
이득액이 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피고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원고의 소유권 취득

이 사건 강제집행과 같은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매각물은 대금과 서로 맞바꾸어 인도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01조 제2항), 그와 같은 대금 납부와 인도가 있을 경우 매수인은 집행대상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원고는 2019. 8. 22.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에도 피고회사가 점유
중이던 소방함 7대, 스마트원 맨홀 4대를 그대로 압류 장소(피고회사의 공장)에 계속 두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는 그 무렵 위 동산들에 대해 점유개정이나 반환청구권의 양도 형태로 위
동산들을 인도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는 그 때 위 소방함 7대, 스마트원 맨홀 4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처분된 동산의 범위

- (1) 원고가 이 사건 강제집행절차에서 매각허가를 받아 2019. 8. 22. 매각대금 4,259만 원을 모두

완납함으로써 피고회사가 점유 중이던 소방함 7대, 스마트원 맨홀 4대를 포함한 총 42개 품목의 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피고회사는 위 소방함 7대를 처분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인정하면서도 위 스마트원 맨홀에 대해서는 위 4대 중 2대만 처분하였다고 인정하고 있고, 나머지 2대의 처분은 부인하고 있다.

(2) 이 사건 강제집행 절차에서 작성된 압류목록에는 압류된 스마트원 맨홀이 총 4대였고(갑 제3호증), 피고회사가 2019. 5. 17. 한국전력공사에 매도한 스마트원 맨홀이 총 5대여서(갑 제5호증), 압류된 스마트원 맨홀 4대 모두 한국전력공사에 매도된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다.

그러나 위 압류목록에 기재된 스마트원 맨홀의 규격은 '2180*2200*2300'으로서 한국전력공사에 매도된 맨홀의 규격(2800*2140)과 상이하고, 압류목록상의 스마트원 맨홀의 개당 평가액이 150만원임에 반해 한국전력공사에 매도된 맨홀의 개당 가액이 4,214만 원(=매매가액 210,700,000원 / 5대)이어서, 규격이나 가액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압류목록에 기재된 스마트원 맨홀 4대가 한국전력공사에 매도된 맨홀 5대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회사가 처분한 원고 소유의 스마트원 맨홀의 개수는, 피고회사가 인정하는 바와 같이 2대로 인정한다.

다) 불법행위의 성립

(1) 피고회사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 소유인 위 스마트원 맨홀 4대 중 2대를 대금 2억 1,070만 원에 매도하고 2019. 9.경 이를 한국전력공사에 인도하였고, 2019. 9. 19.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위 소방함 7개 중 5대를 대금 4,490만 원에, 2019. 10. 17. 인천중부소방서에 2대를 1,800만 원에 각 매도하고, 그 즈음 이를 해당 매수인에게 각 인도해 주었다. 이는 정당한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인 동산을 처분한 것으로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불법행위책임의 성립을 인정하는 이상 부당이득금청구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위 동산의 처분 과정에서 피고회사의 실질적 소유자인 G으로부터 위 처분에 관한 원고의 동의 내지 승인이 있었다고 들었고, 실제로 원고는 위 처분을 승인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다투고 있다. 그러나 피고회사의 실질적 소유자라는 G으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것만으로 원고가 실제로 위 처분에

동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와 같은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피고회사가 원고 소유인 스마트원 맨홀 2대, 소방함 7대를 처분하여 이를 매수인에게 인도해 줌으로써 원고는 그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매수인의 선의취득이 성립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원고 소유였던 스마트원 맨홀 2대, 소방함 7대의 처분 당시의 시가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회사가 각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았던 매매가액이 해당 처분 당시의 원고 소유 동산의 시가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갑 제3, 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 소유로서 압류되었던 소방함과 스마트원 맨홀의 개당 평가액은 각 150만 원인 사실, 피고회사가 각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가액의 경우 스마트원 맨홀의 개당 평가액은 약 4,200만 원, 소방함의 개당 평가액은 개당 약 900만 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회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압류되었던 원고 소유의 스마트원 맨홀과 소방함은 압류 이후 피고회사에 의한 별도의 가공절차나 부자재 설치 작업을 거쳐 가액이 증가된 뒤에 각 매수인에게 처분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애초 압류되었던 원고 소유의 소방함과 스마트원 맨홀의 시가가 위 매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가액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금액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다만 피고회사는 압류되었던 원고 소유의 스마트원 맨홀의 경우 개당 300만 원, 소방함의 경우 개당 190만 원이 각 그 적정시가라는 취지로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위 자인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1,930만 원[= (스마트원 맨홀 300만 원 x 2대) + (소방함 190만 원 x 7대)]으로 인정한다.2)

3) 소결론

따라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9,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22. 12. 20.부터

피고회사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5.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1)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고(대법원 1990. 10. 23. 선고 89다타23329 판결 참조),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85028 판결 참조).

2) 원고가 2021. 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들을 상대로 유체동산인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청구취지가 “주위적으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압류된 42개 품목의 동산을 인도하고,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였던 사실, 이에 대해 2021. 7. 21.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위 압류된 42개 품목을 인도한다. 원고는 피고 C,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관련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관련 화해권고결정에서 원고가 포기한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구하는 피고 C, D에 대한 동일한 청구임이 인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관련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원고 소유였던 스마트원 맨홀 2대, 소방함 7대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함으로써 그 청구권의 부존재에 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기판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관련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은 원고가 다시 동일한 소송물에 관하여 제기한 이 사건 청구에 미친다.

3) 따라서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와 피고 C, D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재천

1)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회사와 한국전력공사 사이의 스마트원 맨홀 매매계약일은

2019. 5. 17.이고, 납품기한은 2019. 6. 30.로서 이는 모두 이 사건 강제집행상의 압류일자보다 빠르다. 다만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9. 7. 9. 이 사건 강제집행에 따른 압류집행이 이루어질 당시 스마트원 맨홀이 압류집행 장소에 현존하고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회사가 이를 한국전력공사에 처분, 인도한 것은 위 압류일자인 2019. 7. 9. 이후인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강제집행 절차에서 작성된 압류목록(갑 제3호증)에 의하더라도, 원고 소유의 소방함 7대의 평가액은 1,050만 원, 스마트원 맨홀 2대의 평가액은 300만 원이어서 평가액의 합계액은 1,350만 원이다. 이는 피고회사가 자인한, 원고 소유의 소방함 7대 및 스마트원 맨홀 2대의 평가액 합계 1,930만 원보다 소액이다. 한편 원고는 “피고회사로부터 2,000만 원은 이미 지급받은 상태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2024. 4.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그러나 피고의 준비서면(2023. 1. 19.자)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2,000만 원은, 원고와 피고회사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2018차2494 어음금 지급명령에서 인정된 어음금의 일부 변제 명목으로 수수된 것일 뿐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원고 소유권에 대한 침해와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